

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5. 7.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가. 상정경과

의안명	의안번호	대표발의자	발의일자	심사경과
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	제8896호	김선교의원	2025.3.13.	○제426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교육위원회(2025.6.11.)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 회부
	제9172호	윤준병의원	2025.3.20.	○제426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교육위원회(2025.6.11.)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 회부

나. 제426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(2025. 6. 30.)에서
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
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·조정하여
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다. 제426회 국회(임시회) 제3차 교육위원회(2025. 7. 2.)는 법안심사
소위원회가 심사·보고한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
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
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·보육과정(이하 “누리과정”이라 함)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7년에 설치된 회계로, 두 차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.

그러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누리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고,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하려는 유보통합 정책은 제도의 실질을 갖추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누리과정 운영 및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2조).

법률 제 호

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(법률 제1667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9203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2조 중 “2025년”을 “2030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<u>2025년</u>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	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(유효기간) -----<u>2030년</u>-----.